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5. 4. 24.(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5. 4. 11.

○ 회부일 : 2025. 4. 11. (의안번호 : 25-37)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기관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3조)

○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부실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별지 서식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입법예고: 2025. 3. 13.~4. 2.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조례의 개정 취지

○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실공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 정비 및 관련 법령 인용 형식 개선

- 제2조제1호: '「건설산업 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2호: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조례 적용기관 확대

- 제3조: 기존의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외에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설립 기관 포함

다. 업무 범위 명확화

- 제4조제2호: ‘품질관리’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라. 부실공사 신고 관련 조항 보완

- 제8조제3항: 신고 제외 사유 중 불명확한 표현 정비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리신고 가능 명시
- 제8조제4항~제6항 신설: 신고 서식 명시, 인적사항 보호, 신고기한 명확화(각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마. 용어 정정

- 제10조제2항: ‘정지’ → ‘중지’

3 개정 내용 검토

○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구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관련 기관 및 공사의 책임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민원 대응의 신뢰성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례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제3항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